

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

議案 番號	
----------	--

提案年月日：1980 . 12 . .

提案者：經濟第2委員長

1. 提案經緯

가. 1980年12月23日 第13次 委員會에서 勞動關係
法 改正 및 制定法律案을 委員會案으로 提案키로
하고 그 成案을 起草小委員會 (趙英吉委員, 李炳主
委員, 鄭漢株委員, 韓基春委員, 全達出委員) 를 構成
하여 委任함.

나. 1980年12月26日 第14次 委員會에서 勞動關係
法改正案 起草小委員長 (趙英吉委員) 으로부터 勤勞
基準法中 改正法律案의 成案에 대한 報告를 받고
小委員會의 草案을 上程하여 審査한 바 委員會案
으로 採擇키로 議決함.



2. 提案理由

經濟事情의 變化에 對處하기 爲하여 現實妥當性이 없
는 事項의 改正과 勞使當事者의 共同利益을 圖謀할 수
있는 事項等を 補完하여 事業場 勞務管理의 合理化를期
하고 勤勞者 保護와 企業發展에 寄與코자함

3. 主要骨子

- 가. 하나의 事業內에 職種別로 退職金 支給率이 달라
勤勞者間의 不滿要因이 되므로 差等制度를 들수 없도
록함. (案第 28條 第 2項)
- 나. 賃金債權의 保障을 爲하여 現在 質權·抵當權·租稅·
公課金·賃金 順位로 되어 있는 것을 質權·抵當權·
賃金 順位로 上向 調整함 (案 第 30條의 2)
- 다. 都給事業의 경우 下受給人의 勤勞者賃金 保障을 爲
하여 直上受給人에게 連帶責任을 賦課토록함
(案 第 36條의 2)
- 라. 1日 8時間의 勤勞時間 硬直性을 緩和하기 爲하여
當事者 合意가 있는 때에는 週 48時間單位로 運營할
수 있도록함 (案第 42條 第 2項)

마. 1日 7時間의 年少勤勞者 勤勞時間을 當事者 合意가
있을때에는 8時間까지 可能토록함 (案第 55 條)

바. 賃金滯払에 對한 使用者의 責任感을 促求하기 為하
여 體刑을 科할 수 있도록함(案第 109 條)

공백

法律 第 号

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(案)

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 28 條에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②第 1 項의 退職金 制度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內에 差等制度를 두어서는 아니된다.

第 30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30 條(金品清算) 使用者는 勤勞者가 死亡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그 支給事由가 발생한 때로부터 14日 以內에 賃金·補償金 기타 一切의 金品을 支給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事情이 있을 경우에는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期日을 延長할 수 있다.

第 30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30 條의 2 (賃金債權 優先辨濟) 賃金·退職金·災害 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產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担保된 債

權을 제외하고는 租稅·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. 다만, 質權 또는 抵當權에 優先하는 租稅·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 33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33 條 (契約書類의 保存)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書類를 3 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第 36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 36 條의 2 (都給事業에 대한 賃金支給) ①事業이 数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下受給人이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を支給하지 못한 때에는 그 直上受給人은 當該受給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.
②第 1 項의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 42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42 條 (勤勞時間) ①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1 日에 8 時間, 1 週日에 48 時間을 基準으로 한다.
다만, 當事者間の 合意에 의하여 1 週日에 12 時間

限度로 延長 勤勞할 수 있다.

②使用者는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4 週間을 平均하여 1 週間의 勤勞時間이 48 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特定日에 대하여 8 時間, 特定週에 대하여 48 時間을 초과하여 勤勞를 시킬 수 있다.

③使用者는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勞働庁長의 認可를 얻어 第1項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. 다만, 事態가 急迫하여 認可를 얻을 餘暇가 없을 경우에는 事後 지체없이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④勞働庁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延長이 不適當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延長時間에 상당한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命할 수 있다.

第47條의 2중 “保健社会部長官”을 “勞働庁長”으로 한다.

第48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. 다만,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

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 55 條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 日에 1 時間, 1 週日에 6 時間을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.

第 109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09 條 第 30 條 · 第 36 條 · 第 36 條의 2 · 第 51 條 · 第 58 條 또는 第 67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 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第 110 條第 1 號중 “第 42 條第 1 項, 第 2 項”을 “第 42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”으로 하고 同條第 2 號중 “第 42 條第 3 項”을 “第 42 條第 4 項”으로 한다.

第 110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 110 條의 2 第 37 條 또는 第 38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第 111 條第 1 號중 “第 42 條第 2 項但書”를 “第 42 條第 3 項但書”로 한다.

附 則

① (施行日)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 다만, 第 28 條第 2 項의 規定은 1981 年 4 月 1 日부터 施行한다.

② (經過措置) 使用者는 이法 施行當時의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이 第 28 條第 2 項의 規定에 違背될 때에는 1981 年 3 月末日까지 이 法에 適合하도록 이를 變更하여 勞動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,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해事業內의 最多數勤勞者에게 適用되는 退職金制度를 適用하는 것으로 본다.

~~XXXXXXXXXX~~

공백

新 旧 条 文 对 比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28 條 (退 職 金 制 度) 使 用 者 는 繼 統 勤 勞 年 數 1 年 에 對 하 여 30 日 分 以 上 의 平 均 賃 金 을 退 職 金 으 로 서 退 職 하 는 勤 勞 者 에 게 支 給 할 수 있 는 制 度 를 設 定 하 여 야 한 다 . 다 만 , 勤 勞 年 數 가 1 年 未 滿 인 境 遇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.</p> <p>< 新 設 ></p>	<p>第 28 條 (退 職 金 制 度)</p> <p>① (左 同)</p> <p>② <u>第 1 項 의 退 職 金 制 度</u> <u>를 設 定 함 에 있 어 서 하</u> <u>나 의 事 業 內 에 差 等 制</u> <u>度 를 두 어 서 는 아 니 된</u> <u>다 .</u></p>

~~Handwritten signature~~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30 條 (金 品 清 算) <u>使 用</u> <u>者 是 勤 勞 者 的 死 亡 또</u> <u>는 退 職 的 境 遇 에 그</u> <u>權 利 者 가 清 算 을 要 求 한</u> <u>때 是 14 日 以 內 에 賃</u> <u>金 補 償 金 其 他 一 切 的</u> <u>金 品 을 支 給 하 여 야 한</u> <u>다. 다 만, 特 別 한 事 情</u> <u>이 有 을 境 遇 是 當</u> <u>事 者 間 的 合 意 에 依 하</u> <u>여 期 日 을 延 長 할 수</u> <u>有 다 .</u></p>	<p>第 30 條 (金 品 清 算) <u>使 用</u> <u>者 是 勤 勞 者 가 死 亡</u> <u>또 是 退 職 한 경 우 是 是</u> <u>그 支 給 事 由 가 發 生 한</u> <u>때 로 부 터 14 日 以 內 에 ...</u> </p>
<p>第 30 條 的 2 (賃 金 債 權 優先 辨 濟) 賃 金, 退 職 金, 災 害 補 償 金 其 他 勤 勞 關 係 로 인 한 債 權 是 使 用 者 的 總 財 產 에 對</p>	<p>第 30 條 的 2 (賃 金 債 權 優先 辨 濟) 對</p>

하여 質權, 抵當權, 租稅·公課金을 제외하고는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.

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担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稅·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優先하여 辨濟되어야 한다. 다만, 質權 또는 抵當權에 優先하는 租稅·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第 33 條 (契約書類의 保存) 使用者는 勤勞者 名簿와 勤勞契約에 關한 重要한 書類를 3 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第 33 條 (契約書類의 保存) ...
.....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勤勞契約에 關한 重要한 書類를 3 年間 保存하여야 한다.

< 新設 >

第 36 條의 2 (都給事業에 對한 賃金支給) ① 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依하여 行하여 지는 경우에 下受給人이 直上受 給人의 歸責事由로 勤

며 第 44 條의 規定에 依
한 休憩時間을 變更할
수 있다.

1. 省略

2. "

3. "

4. 其他 保健社會部長官
이 必要하다고 認定하
는 事業
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
第 48 條 (年次有給休暇) ①

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
勞勤者에 對하여는 8일,
9割以上 出勤한 者에
對하여는 3日의 有給休
暇를 주어야 한다.

② 使用者는 2年以上 繼
續 勤勞한 勤勞者에 對
하여는 1年을 超過하는
繼續勤勞年數 1年에 對

第 48 條 (年次有給休暇)

① (左同)

② (左同)



現 行	改 正 (案)
<p>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 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그 休暇 總日數가 20日 을 超過할 境遇에는 그 超過하는 日數에 對하여 는 通常賃金を 支給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 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 야 하며 그 期間에 對 하여는 就業規則이나 其 他로 定하는 바에 依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 을 支給하여야 한다. 다만, 勤勞者의 請求한</p>	<p>③(左同)</p>

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甚大한 支障이 있는 境遇에는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.

④勤勞者가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期間과 産前産後의 女子가 第60條의 規定에 依하여 休業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出勤한 것으로 본다.

<新設>

④ (左同)

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. 다만,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~~한정~~

現 行	改 正 (案)
<p>第 55 條 (勤 勞 時 間) 13 才 以 上 18 才 未 滿 者 的 勤 勞 時 間 是 1 日 到 7 時 間 1 週 日 到 42 時 間 을 超 過 不 可 能 矣 。 但 是 , 勞 働 廳 長 的 認 可 를 얻 은 境 遇 에 는 1 日 到 2 時 間 以 內 的 限 度 로 延 長 할 수 有 矣 .</p>	<p>第 55 條 (勤 勞 時 間) 但 是 , 當 事 者 間 的 合 意 에 依 據 하여 1 日 到 1 時 間 , 1 週 日 到 6 時 間 을 限 度 로 延 長 할 수 有 矣 .</p>
<p>第 109 條 第 51 條 , 第 58 條 또 는 第 67 條 的 規 定 에 違 反 한 者 는 3 年 以 下 的 懲 役 또 는 500 萬 圓 以 下 的 罰 金 에 處 한 다 .</p>	<p>第 109 條 第 30 條 . 第 36 條 . 第 36 條 的 2 ; 第 51 條 . 第 58 條 또 는</p>
<p>第 110 條 次 各 號 的 1 에 該 當 하 는 者 는 2 年 以 下 的 懲 役 또 는 500 萬 圓 以 下 的 罰 金 에 處 한 다 . 1 . 第 9 條 , 第 26 條 第 1 項 , 第 27 條 第 1 項 , 第 2 項 ,</p>	<p>第 110 條 1</p>

第 27 條의 2 , 第 28 條,
第 35 條; <u>第 42 條第 1 項,</u> <u>第 42 條第 1 項</u> 내
<u>第 2 項,</u> 第 43 條, 第 44	<u>지</u> <u>第 3 項</u> ·
條, 第 50 條, 第 55 條,
第 56 條, 第 57 條, 第 60
條, 第 61 條, 第 64 條第
1 項, 第 65 條, 第 66 條,
第 68 條, 第 76 條, 第 78
條, 第 79 條, 第 80 條,
第 82 條, 第 83 條와 第
105 條第 2 項에 違反한
者.
2. <u>第 42 條第 3 項,</u> 第 73	2. <u>第 42 條第 4 項</u> ·.....
條第 2 項, 第 4 項의 規
定에 의한 命令에 違
反한 者.
3. 省 略	3.
第 110 條의 2 第 30 條, 第	第 110 條의 2 第 37 條 또
36 條, 第 37 條 및 第	는 第 38 條의
38 條의 規定에 違反

第 73 條第 1 項, 第 74 條,
第 75 條第 3 項, 第 92 條,
第 94 條, 第 95 條; 第 96
條, 第 99 條第 2 項, 第
100 條, 第 101 條와 第
104 條의 規定에 違反
한 者.
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
~~11-412~~

행복